환경부 생활하수과-407호(2013. 1. 3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2013. 1. 31



환 경 부

http://www.me.go.kr

차 례

Ⅰ. 등록·변경등록

1. 등록 ····· 3
2. 변경 등록 ····· 11

Ⅱ. 신고·변경신고

1. 신고 ····· 16
2. 변경 신고 ····· 22

Ⅲ. 행정처분

1. 행정처분 기준 ····· 27
2.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 31
3. 행정처분 및 통지 ····· 32
4. 등록(신고)증 및 등록(신고)대장 정리 ····· 32

Ⅳ. 지도점검

1. 점검실시 및 방법 ····· 34
2. 주요 점검내용 ····· 35
3. 점검시의 유의사항 ····· 35

Ⅴ. 행정사항

1. 본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 36
2. 보고사항 ····· 36
3. 보안유지 ····· 37

Ⅵ. 붙임자료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 39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41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 43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 ····· 44
5. 보유기술인력대장 ····· 46
6. 근무확인서 ····· 47
7. 현지확인 조사서 ····· 48
8. 일일업무일지 양식(예) ····· 49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표 ····· 50
10. 위반확인서 ····· 54
11. 보고서식 ····· 55

Ⅶ. 참고자료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장비 및 관련사진 ····· 60
2.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 및 기준 ····· 62
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65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업무처리흐름도 ····· 67
5.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 6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목 적〉

이 지침은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신고) 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고, 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적용범위〉

□ 공공하수도의 범주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서,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 (하수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장비·기술인력)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분야와 하수관거 관리대행 분야로 구분하여 적용

※ 단, 하수저류시설은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하수관거에 포함 → 하수관거 관리대행 분야 등록기준 적용

〈경과조치〉

□ 하수도법 부칙 <법률 제11264호, 20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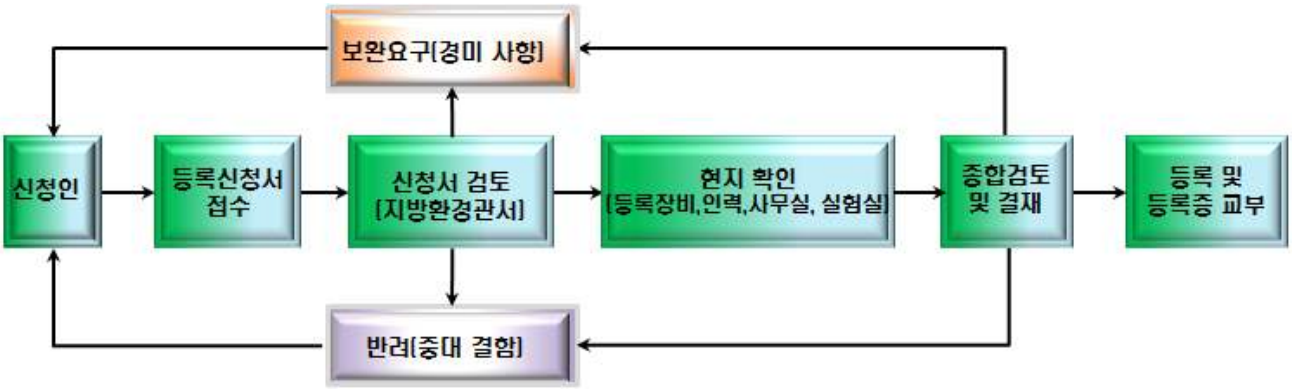
○ 제2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보되,

○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Ⅰ. 등록· 변경등록

1. 등록

가. 업무처리흐름도



나. 등록신청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제도 시행(2013.2.2)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2014년 2월1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 법인이 공공하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정한 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거나 관리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또한, 설치 중인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 시점과 동시에 동 법에 따른 일정한 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거나 관리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설치계획 중인 경우는 동 법에 따라 일정한 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거나 관리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등록 신청시 사무실과 실험실이 상이한 경우 등록신청자에게 실험실 소재지를 사무실에 부속되거나 최단거리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되, 가능한 한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다. 구비서류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붙임 1)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등록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양식에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 분야와 하수관거로 분야를 구분하고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 분야를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로 관리대행 가능한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신청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의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서 시설용량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신청

※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 분야와 하수관거 분야에 대한 관리대행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①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원증명서 등)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

(하수도법 제19조의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하수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4)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장비

- 실험실에는 등록기준에 따른 모든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시약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등)

② 동일한 실험기기, 장비 등이 여러 측정항목에 공통으로 사용될 경우 그 실험기기, 장비는 측정항목의 각각에 대해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③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임대사용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실험기기, 장비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실험기기의 단순보관 및 방치는 실험기기의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2) MLSS(Mixed Lig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거 관리대행
  1) 준설차량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3) 연막시험용 배풍기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구분		기술인력
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시설용량	
	1) 500m^3/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수질환경기사 1명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2) 화공기사 (3) 토목기사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2) 10,000m^3/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3) 10,000m^3/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나. 하수관거 관리대행		가)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환경기사 (2) 토목기사 (3)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나)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질환경산업기사 (2) 토목산업기사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일반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기술자격 및 근무여부 확인

- 국가기술자격수첩원본 또는 건설기술자격증 원본에 의거 자격증 대여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상태 여부 및 다른 개별법령에 의한 면허 등에 기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신청업체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되, 필요시 국민연금 가입현황, 의료보험 가입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라.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요구하며,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②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지확인

① 기술인력의 확인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대행 분야 및 시설용량을 확인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으로 등록신청한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기술인력으로 등록신청한 본인(등록인력)이 자필한 근무확인서(붙임 6)를 징구한다.
- 소속업체의 사무분장(업무성격 및 업무량) 등을 확인하여 등록인력의 상근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융통성 있게 확인하되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확인은 등록신청서 상의 사무실 소재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신청한 기술인력이 방문일에 사무실 소재지로 집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확인

- 장비는 이미 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하며, 이미 제출된 실험기기 배치 사진에 의거 분별할 수 없는 부분 등을 확인한다.
- 장비의 정상 작동여부 및 정상실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장비관리를 위한 대장 등의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바. 기 타

① 현지 확인후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현지확인 조사서(붙임 7)를 작성·보고한다.

② 실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도·설명하여 준다.

③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실사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로 현장 재실사를 갈음하도록 한다.

④ 등록신청서 상의 관리대행 분야 및 시설용량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과 현지 확인결과 기술인력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사. 등록 및 등록증 교부

(1) 등록증 교부

① 지방환경관서별로 순차적인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예) ○○○○환경청 제 호

※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 분야 등록은 “○○○○환경청 제1-○호”, 하수관거분야 등록은 “○○○○환경청 제2-○호”, 신고는 “○○○○환경청 제3-○호”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② 등록증에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 분야(공공하수도, 하수관거)와 관리대행업 수행능력(장비 및 시설용량별 인력 보유현황 등)을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 등록증에 해당 분야를 명시하여 교부한다.

※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분야와 하수관거 분야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각각 교부한다.

③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자에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결정 사항 통보와 함께 등록증(붙임 2)을 교부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등록증 교부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등록증 교부조건).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91호)을 준수할 것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2012-41호)를 준수할 것
-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별표1의2)을 준수할 것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별표 1의2 제4호를 위반한 행정조치로서, 성과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 과징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⑵ 대장정리 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대장(붙임 4) 및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 5)을 정리한다.

② 등록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 기록란에 해당 기술인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인력으로 등록되었음을 기재(등록날짜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한 후 송부한다.

③ 등록서류 일건은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준영구 보존문서로 분류·보관한다.

〈벌칙〉

(하수도법 제76조제1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77조제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변경 등록

가. 총괄

변경 등록 업무처리는 신규등록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항에 관해서만 처리한다.

나. 변경신고 내용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호·명칭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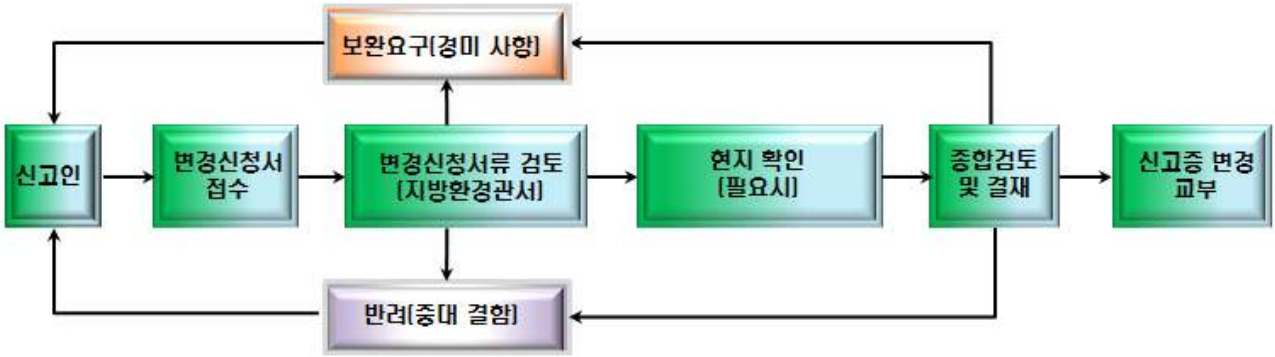
②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③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④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변경

다. 상호·명칭 변경

(1) 업무처리 흐름도



(2)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3)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상호명칭과 변경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대장(붙임 4)의 등록변경 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후 기록자 날인을 한다.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 **.	(주) ○○○로 상호 변경	○○○ (인)

③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 **.	(주) ○○○로 상호 변경	○○○ (인)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상호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변경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규등록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예"에 준하여 제출토록 한다.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서류검토는 신규등록시의 서류검토 방법에 준한다.

② 기술인력 본인의 근무확인서(붙임 6)를 징구한다.

③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업체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 5)을 정리한다.

④ 기술인력 변경내용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등록증 원본을 구비서류에서 제외, 대신 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기록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었음을 기재(등록날짜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마. 성명·대표자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상호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의 대표자와 변경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대표자의 신원증명을 통하여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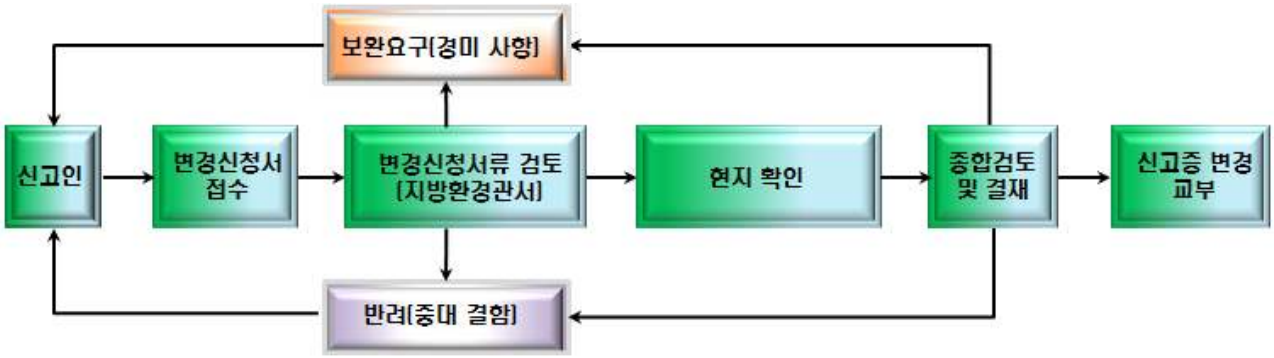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 **.	대표자 변경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 (인)

③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상호변경의 경우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⑴ 업무처리 흐름도



⑵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사무실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실의 확보여부를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하여 소유권과 임차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사무실 소재지와 변경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④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대장을 정리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의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사.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1) 업무처리 흐름도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과 동일

(2) 구비서류

① 변경신청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실험실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실험분석 장비 배치 전경사진

④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원본

(3)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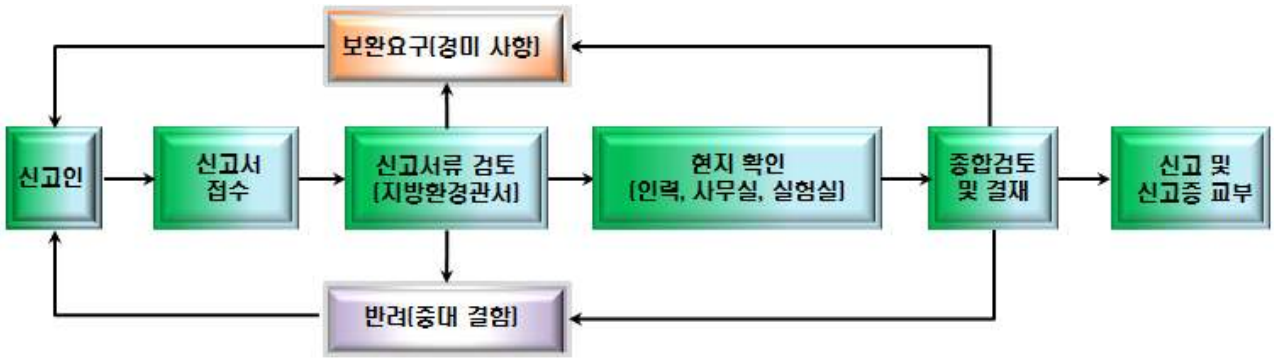
② 실험실의 소재지와 실험분석장비가 실험하는데 적정한가 여부를 확인한다(실험기기의 단순보관 및 방치는 실험기기의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대장을 정리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Ⅱ. 신고 · 변경신고

1. 신고

가. 업무처리흐름도



나. 신고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행(2013.2.2)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관리대행업 신고대상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함

(2) 신고시에 사무실과 실험실이 상이한 경우 등록신청자에게 실험실 소재지를 사무실에 부속되거나 최단거리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되, 가능한 한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다. 구비서류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붙임 3)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의4 서식

②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 양식에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분야와 하수관거

분야로 구분하고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분야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로 관리대행 가능한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신청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의 관리대행업자 등록기준에서 시설용량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신청

※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와 하수관거에 대한 관리대행업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 1의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원본 또는 건설기술자격증 원본에 의거 자격증 대여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상태 여부 및 다른 개별법령에 의한 면허 등에 기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신청업체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되, 필요시 국민연금 가입현황, 의료보험 가입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회사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1)**>**

2. 기술인력

구분		기술인력
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시설용량	
	1) 500m^3/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수질환경기사 1명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2) 화공기사 (3) 토목기사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2) 10,000m^3/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3) 10,000m^3/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나. 하수관거 관리대행		가)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환경기사 (2) 토목기사 (3)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나)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질환경산업기사 (2) 토목산업기사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일반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사유 및 기일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하며, 미비사항이 중대하여 단시일내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②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한번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특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를 징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지확인

① 기술인력의 확인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대행 분야 및 시설용량을 확인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본인과 이미 제출된 기술자격수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기술인력으로 신고한 본인(신고인력)이 자필한 근무확인서(붙임 6)를 징구한다.

- 소속업체의 사무분장(업무성격 및 업무량) 등을 확인하여 신고인력의 상근 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융통성 있게 확인하되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확인은 신고서상의 사무실 소재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한 기술인력이 방문일에 사무실 소재지로 집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기 타

① 현지 확인후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현지확인 조사서(붙임 7)를 작성·보고한다.

② 실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고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도·설명하여 준다.

③ 미비사항이 극히 경미하여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로 보완시키거나 현장실사 후 추가 보완자료 제출로 현장 재실사를 갈음하도록 한다.

④ 신고서상의 관리대행 분야 및 시설용량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과 현지 확인결과 기술인력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사. 신고증 교부

(1) 신고증 교부

① 지방환경관서별로 순차적인 신고번호를 부여한다.

예) ○○○○환경청 제 호

※ 신고는 "○○○○환경청 제3-○호"로 번호를 부여한다.

② 신고증에 신고인의 신고 분야(공공하수도, 하수관거)와 관리대행업 수행능력(시설용량별 인력 보유현황 등)을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신고증에 해당 분야를 명시하여 교부한다.

③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자에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결정 사항 통보와 함께 신고증(붙임 2)을 교부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증 교부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신고증 교부조건).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91호)을 준수할 것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2012-41호)를 준수할 것
-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별표1의2)을 준수할 것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별표 1의2 제4호를 위반한 행정조치로서, 성과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 과징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⑵ 대장정리 등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붙임 4) 및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 5)을 정리한다.

② 신고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기록란에 해당 기술인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인력으로 신고되었음을 기재(신고날짜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한 후 송부한다.

③ 신고서류 일건은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준영구 보존문서로 분류·보관한다.

2. 변경 신고

가. 총괄

변경 신고 업무처리는 신규 신고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항에 관해서만 처리한다.

나. 변경신고 내용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호·명칭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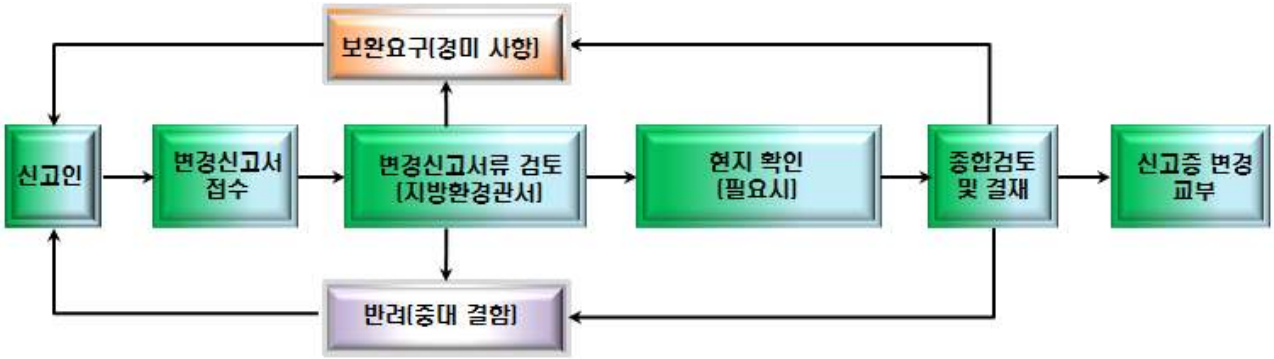
②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③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④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변경

다. 상호·명칭 변경

(1) 업무처리 흐름도



(2) 구비서류

①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 원본

(3)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상호명칭과 변경 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신고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붙임 4)의 신고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후 기록자 날인을 한다.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 **.	(주) ○○○로 상호 변경	○○○ (인)

③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고인에게 송부한다.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 **.	(주) ○○○로 상호 변경	○○○ (인)

라. 기술인력의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상호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변경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규 신고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예"에 준하여 제출토록 한다.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서류검토는 신규 신고시의 서류검토 방법에 준한다.

② 기술인력 본인의 근무확인서(붙임 6)를 징구한다.

③ 신고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업체별 보유기술인력대장(붙임 5)을 정리한다.

④ 기술인력 변경내용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신고증 원본을 구비서류에서 제외, 대신 변경신고서 접수시 제출받았던 기술인력의 자격수첩기록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신고되었음을 기재(신고날짜 및 담당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마. 대표자 변경

⑴ 업무처리흐름

① '상호변경'의 경우와 같음

⑵ 구비서류

①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상의 대표자와 변경신고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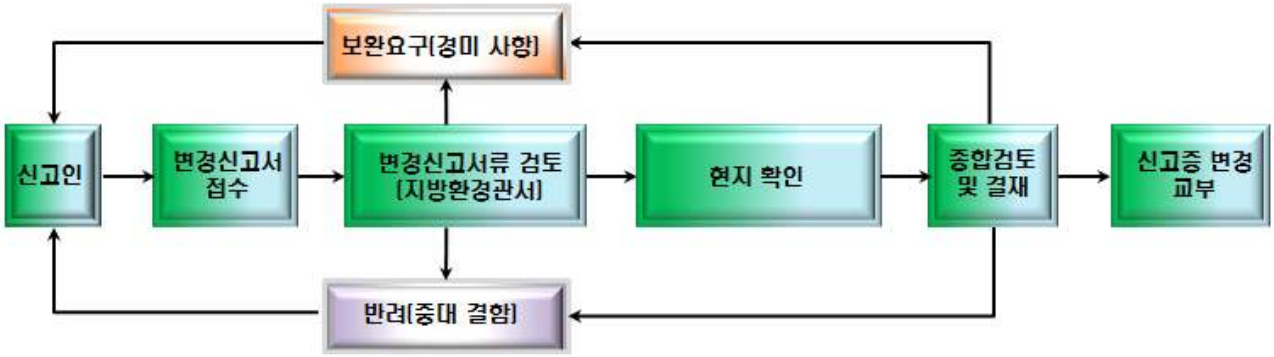
<예>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201＊. **. **.	대표자 변경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	○○○ (인)

②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상호변경의 경우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신고인에게 송부한다.

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⑴ 업무처리 흐름도



⑵ 구비서류

①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 원본

⑶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사무실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신규 신고에 준하여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실의 확보여부를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하여 소유권과 임차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사무실 소재지와 변경신고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④ 신고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을 정리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의 사무실소재지를 변경하여 기재하고 신고인에게 송부한다.

사.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1) 업무처리 흐름도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과 동일

(2) 구비서류

①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② 실험실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실험분석 장비 배치 전경사진

④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 원본

(3) 검토사항 및 조치

①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신규 신고에 준하여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실의 소재지와 실험분석장비가 실험하는데 적정한가 여부를 확인한다(실험기기의 단순보관 및 방치는 실험기기의 구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신고인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을 정리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송부한다.

Ⅲ. 행정처분

1. 행정처분 기준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7 별표5의2에 의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1) 일반기준

①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③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19조의4 제1항제1호 · 제2호 ·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시 그 조치(보완)기간은 당해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안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완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실험기기 부족의 판단은 하나의 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개의 실험기기가 필요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실험기기가 없어도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실험기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 준수사항 미이행, 등록·신고한 인력의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의 상근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신고)시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등록·신고한 인력이 해당 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 장소(공공하수처리시설, 본사·지사 사무소 등)에 관계없이 상근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인 또는 단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13조의7 별표 5의2)**>**

위 반 사 항	해 당 조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19조의4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19조의4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다.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19조의4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제1항제4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19조의4제1항제5호				
1)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	법19조의4제1항제6호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19조의4제2항제1호		1개월	3개월	6개월
사.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19조의4제1항제7호	등록취소			
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19조의4제1항제8호	등록 취소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제2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준수사항〉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별표 1의2)

1.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5조의3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관리대행 실적을 제출시**에는 준수사항 제4호의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11-4)**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영업정지(1~6개월) 또는 과징금(1,000만원~10,000만원)부과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3)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80조제4항3의2, 시행령 제41조제2항제9호다목)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구 분		지자체명	시설명	시설용량 (㎥/일, ㎞, ㎥)	대행비 (천원/년)	관리대행 범위 (단순/복합)	관리대행기간		소재지	비고
							개시일	종료일		
공공하수처리시설	500㎥/일 이상									
	500㎥/일 미만									
하수관거(㎞)										
슬러지처리시설 (㎥/일)										
분뇨처리시설 (㎥/일)										
하수저류시설 (㎥)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나. 기 타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타인에게 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본 업무상으로는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양태로 나타남)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관리대행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행정처분의 업무처리

가. 위반사실의 확정

(1)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현지 확인,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을 확정한다.

(2) 위반사실을 확정할 때에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서 등 주요 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한다.

(4) 기타 행정처분 후의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5) 위반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예감 등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행정처분내용의 사전통지

(1)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③ 처분예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경우 의견 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정자격의 상실 등으로 당해 행정처분의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행정처분 및 통지

(1)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 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성질을 고려하여 이행에 필요한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동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횟수 누적에 따라 가중처분 됨을 명시한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에서 그 처분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 아울러, 처분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4. 등록(신고)증 및 등록대장 정리

(1) 등록 취소 시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붉은선으로 전 쪽을 (×)한 후 삭제한다. 다만, 편철된 내용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업정지시는 등록(신고)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처분사항 란에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날인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뒤 송부한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에도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확인 날인을 한다.

(3) 경고처분 시에는 등록(신고)증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에만 기재한다.

※ 등록대장 및 신고대장은 양식을 같이 사용하고 분철하여 관리한다.

Ⅳ. 지도점검

1. 점검실시 및 방법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등록·신고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지도·점검 우선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① 최근에 행정처분 및 고발된 업체

②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③ 기타 부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등(영업실적이 없거나 적은 업체 등)

(3)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 조치사항 등 일일 지도·점검 결과를 일일업무일지(붙임 8)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5) 일일업무일지는 지도·점검 부서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종료하는 날부터 1년간 당해 지도·점검 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6)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10)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6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붙임 9)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 등을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주요 점검내용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준수여부(장비, 기술인력 등)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대여 여부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영업실적의 허위 유무

(4)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5)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운영·관리에 대한 기록보존, 성과평가 수검여부 등)

(6) 등록·신고한 기술인력의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등

3. 점검시의 유의사항

(1) 점검행위는 업체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업체에 위압감을 주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Ⅴ. 행정사항

1. 본 지침적용 및 등록관리

(1) 본 지침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 처리할 수 있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대장, 업체별 보유기술인력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3)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4) 민원인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업체 명단을 요구한 때에는 업체명단을 일괄 안내하거나 지방환경관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신고) 업체 명단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일괄 안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사항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실적보고(관리대행업자→지방환경관서의 장)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에 의거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별표 1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준수사항 제4호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붙임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 및 점검 관련실적 보고(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부장관)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붙임11-1~4)의 서식에 의거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현황, 연간 관리대행 실적, 행정처분 등 지도·점검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안유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관리대행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Ⅵ. 붙임 자료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
5. 보유기술인력대장
6. 근무확인서
7. 현지확인 조사서
8. 일일업무일지 양식(예)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표
10. 위반확인서
11. 보고서식

    11-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현황

    11-2) ○○년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11-3) ○○년도 지도・점검 실적보고

    11-4) 성과평가 결과보고

(붙임 1)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제외) **[ ] 500㎥/일 미만** **[ ] 10,000㎥/일 미만** **[ ] 10,000㎥/일 이상**

[ ]하수관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 등록(변경)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신고)내용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변경내용 (관리대행범위)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을 신청 또는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변경신고)의 경우: 등록증(신고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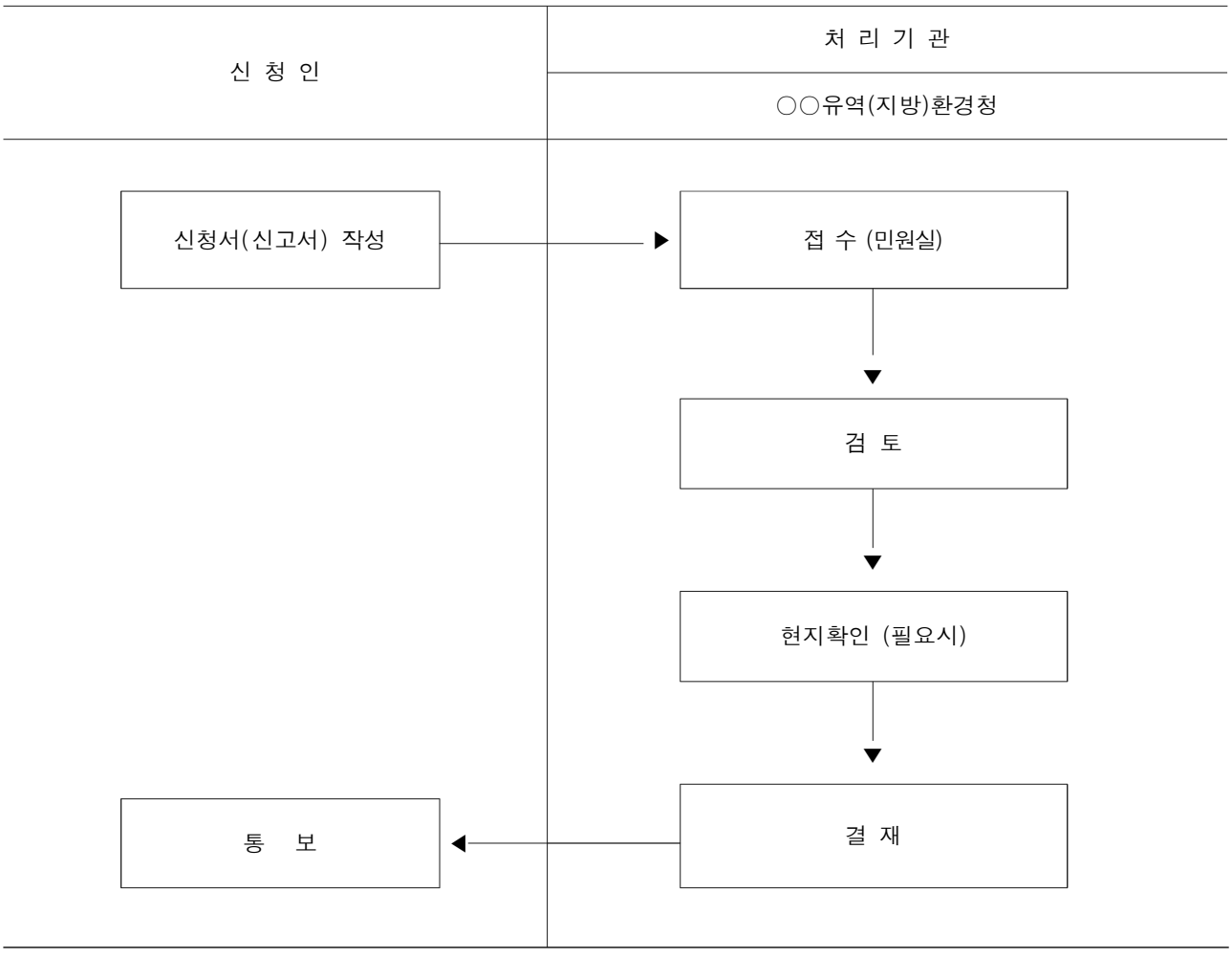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변경)신청 및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
2. 등록(신고)한 사항 중 변경등록(신고)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명칭의 변경
   나.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다.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붙임 2)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제외) [ ] 500㎥/일 미만
[ ] 10,000㎥/일 미만
[ ] 10,000㎥/일 이상

[ ]하수관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등록번호	○○○○환경청 제 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대행 범위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비 고

(붙임 3)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제외) **[ ] 500㎥/일 미만**
[ ] 10,000㎥/일 미만
[ ] 10,000㎥/일 이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 ]하수관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사업소 전화번호
관리대행범위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대장

<table>
<tr><td colspan="2">상 호(명칭)</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6">등록(신고)
현황</td><td>등록(신고)번호</td><td>등록(신고)일자</td><td>등록·신고 분야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 미만,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하수관거, 분뇨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구분 기재)</td></tr>
<tr><td>제 호</td><td></td><td></td></tr>
<tr><td>제 호</td><td></td><td></td></tr>
<tr><td>제 호</td><td></td><td></td></tr>
<tr><td>제 호</td><td></td><td></td></tr>
<tr><td>제 호</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명</td><td></td><td>휴대폰/E-mail</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사무실 소재지</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실험실 소재지</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기타 참고사항</td><td colspan="2"></td><td></td></tr>
</table>

(등록·신고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붙임 5)

보유기술인력대장

일자	직위 (직급)	성명	전화번호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임명일자	퇴직일자	전근무지	비고

(붙임 6)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1 . . .부터 201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전화번호/E-mail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아 래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명 :

자격증번호 :

(붙임 7)

현지확인 조사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별표 1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201 . . .

조사자	소 속 :	소 속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 아 래 -

1. 종합의견

⑴ 기 술 인 력 :

⑵ 장 비 :

※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⑶ 기 타 :

(붙임 8)

일일업무일지 양식(예)

1. 표지 양식

일 일 업 무 일 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일일업무일지는 A4용지 크기로 횡 또는 종으로 작성하되,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2. 내부 양식

점검 일자	점검사업장명	점검사항	점검(조치)결과	비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

(붙임 9)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지도·점검표

1. 일반현황

관리대행업자 명		대표자	
등록(신고)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사무실		
	실험실		

2. 기술인력 현황

성 명	기술자격 명칭	자격증 번호	담당업무	임용일

3. 장비 보유현황(등록시 장비 참고)

시설 및 장 비 명	규 격	보유수량	비 고

4. 관리・운영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등록(신고) 사항	등록기준(장비, 기술인력 등)의 준수 여부		
	등록(신고)증을 임대하거나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도록 방조하였는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요건 발생시 기한 내에 변경등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적용 여부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및 분석 등의 실시 여부		
	측정시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분석값을 임의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액을 규정대로 조제・사용하는지의 여부		
관련 규정 및 고시・지침 준수여부	관리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정 및 고시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유지관리 결과 기록 및 보존	유지관리(운영, 설비, 계측기기 등) 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는지 여부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여부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관리대행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측정기기 및 장비	측정기기 및 장비의 부속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측정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측정기기 및 장비는 실제검사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사항	대행계약 내용 준수, 성과평가의 성실한 수검 등 기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		
	행정처분, 기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대행실적 보고 등을 기한내 보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상기 외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건의사항(관리대행업자)

6. 점검자 의견

7. 첨 부 :

201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

(붙임 10)

발급번호	위반확인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1 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령 조항 :
3. 위반내용 :

201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전화번호 :)
입회자(사본수령,환경관리인) (안) (전화번호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붙임11-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현황

(○○년 12월말 기준)

연번	상 호	등록·신고번호 (등록·신고일)	대표자	소재지	구분 (등록·신고)	분야 (등록·신고)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 미만,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하수관거, 분뇨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구분 기재)	전화번호	비고

※ Excel로 작성

(붙임11-2)

○○년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연번	시설 구분	시·도	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일,㎞, ㎥)	관리대행 실시일	대행비용 (천원)	관리대행업자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500㎥/일 미만), 하수관거, 슬러지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구분하여 Excel로 작성

(붙임11-3)

○○년도 지도·점검 실적보고

연번	관리대행업자명	등록・신고번호 (등록・신고일)	대표자	소재지	점검일	위반내용	조치일	조치사항	비고

※ Excel로 작성

(붙임 11-4)

성과평가 결과보고

연번	지자체명	시설명	시설용량 (㎥/일)	위탁현황		위탁성과 평가실시 현황					평가결과(총 평균 및 분야별 평균 기재)					
				계약기간	위탁방법 (단순/복합)	평가기관 (자체/전문평가기관대행)	평가범위	위탁성과서 제출일 (업체→지자체)	심의여부 (○,X)	평가 완료일	총 평균	위탁업체	하수관거	하수 처리장	하수 슬러지및 재이용	서비스질
						자체	*수처리시설, 관거, 슬러지 처리시설*									
						전문평가 기관										

※ Excel로 작성,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유역(지방)환경청은 취합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Ⅵ. 참고자료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장비 및 관련사진
2.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 및 기준
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흐름도
5.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참고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장비 및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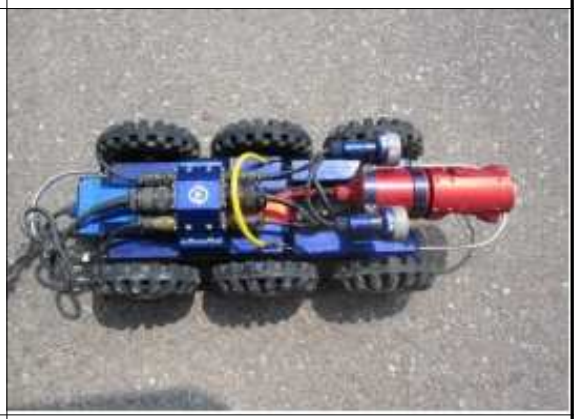
❑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제외) (각 1대 이상)

번호	장 비 명	사 용 용 도	비 고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처리공정에 대한 수온, pH, DO, ORP 등 측정	
2	MLSS 측정기	생물반응조 등 MLSS 측정	
3	실험분석장비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분석	
4	이동식 유량계	배관에 흐르는 유량 측정	

장비명	다항목측정기	MLSS 측정기
사진 (예시)		
사용 용도	공정별 DO, pH, 수온 등 현장측정	생물반응조 등 MLSS측정
장비명	이동식 유량계	
사진 (예시)		
사용 용도	배관에 흐르는 유량 측정	

❑ 하수관거

번호	장 비 명	사 용 용 도	비 고
1	준설차량	하수관거 찌꺼기 제거용	1식
2	CCTV 설비	관거내부상태 촬영	1식
3	연막시험용배풍기	관거 및 배수설비 오접여부 조사	1식
4	공기압 시험기	관 내부 Leak(누수) 상태 점검	1식

장비명	준설차량	CCTV 설비
사진 (예시)		
사용 용도	하수관거 찌거기 제거용	관거내부상태 촬영
장비명	연막시험용배풍기	공기압 시험기(데이터로거)
사진 (예시)		
사용 용도	관거 및 배수설비 오접여부 조사	관내부 Leak 상태 점검

(참고 2)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 및 기준

❑ 법적근거

〈과징금 관련 하수도법 조문〉

❍ 하수도법 제50조제1항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부과방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과권자 (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9.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징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3호	2,000	5,000	-
2.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4호	2,000	5,000	10,000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5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0	5,000	10,000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000	10,000
4.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19조의4 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1,000	3,000	5,000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	법19조의4 제2항제3호	2,000	5,000	10,000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①발 행 번 호		
②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③위 반 일 자		
④위 반 행 위		
⑤납 부 금 액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기 관		

「하수도법」 제50조제3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지방환경관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보관용)

①발 행 번 호		
②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③위 반 일 자		
④위 반 행 위		
⑤납 부 금 액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발 행 번 호		
②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③위 반 일 자		
④위 반 행 위		
⑤납 부 금 액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수납인

257㎜×182㎜[백상지(1종) 34g/㎡]

(참고 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법적근거

〈과태료 관련 하수도법 조문〉

❍ 하수도법 제80조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과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8)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 (하수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다. 법 제80조제4항제3호·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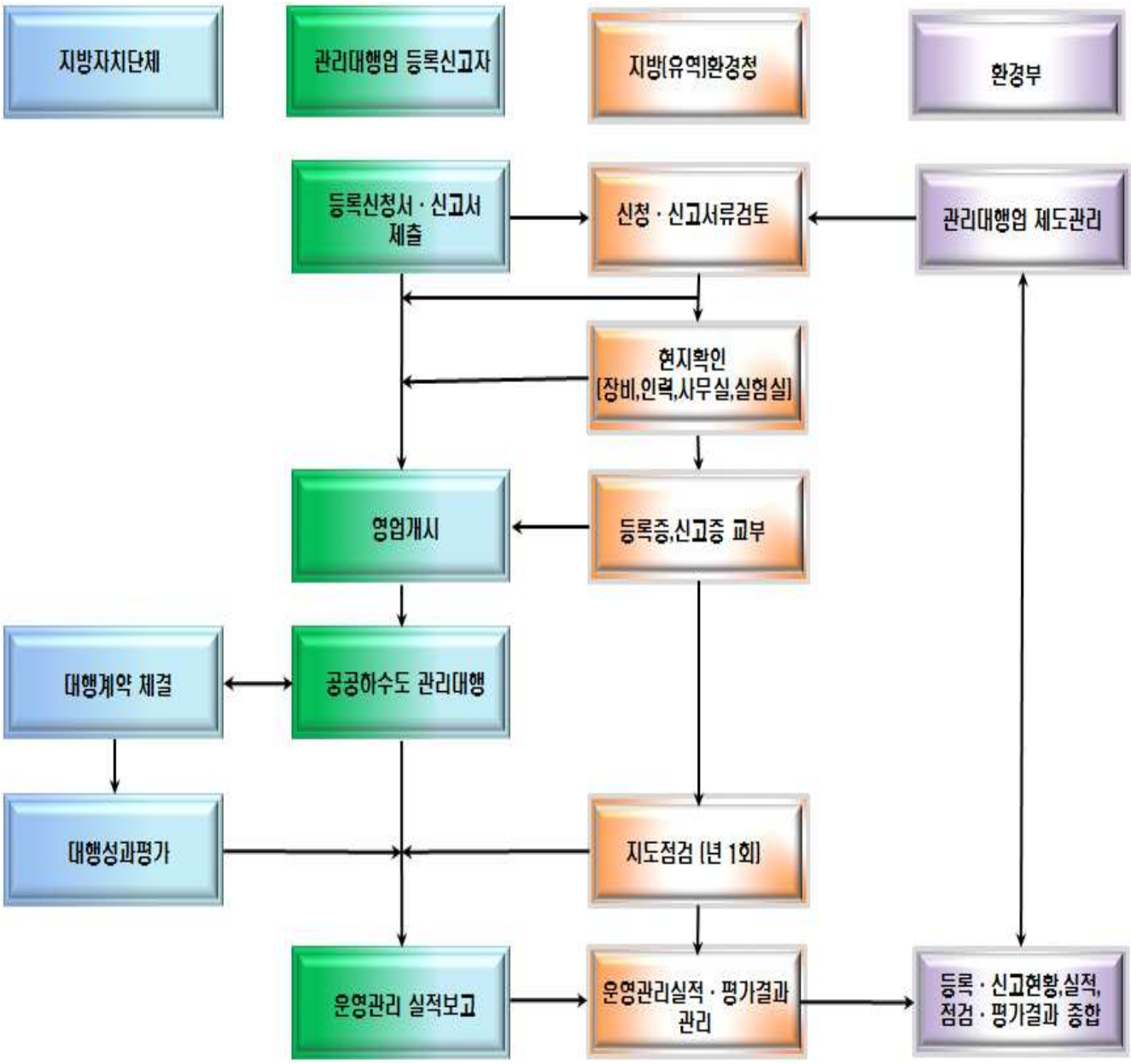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의2	50	70	100

(참고 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흐름도



(참고 5)
환경부고시 제2012-41호

「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위탁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위탁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

의 위탁

2. 복합관리 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위탁

제3조(위탁성과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74조제3항, 영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위탁성과 평가범위) 이 규정에 의한 위탁성과 평가범위는 수탁자가 위탁 관리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5조(위탁성과 평가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위탁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제1절 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위탁관리의 참여자격) ①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4조제3항, 영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위탁관리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의 입찰참여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

자격에 위탁 대상시설중 처리시설 용량이 가장 큰 시설을 기준으로 한 시설 용량의 50% 이상의 운영관리 또는 시운전 실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발주)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운영관리의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실적은 3개월 이상 수행한 실적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대상시설의 용량이 500톤/일 미만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상시설의 규모, 경쟁성, 용역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운영관리 실적 용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배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과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2절 수탁자 선정절차

제9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위탁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과 범위
2. 위탁의 방법 및 기간
3.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
5. 고용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

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무 수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수탁자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2. 복합위탁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다.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제13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의 내용 및 범위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5. 위탁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위탁에 따르는 사항

제3절 수탁자선정위원회

제14조(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관계공무원

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15조(수탁자선정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성과 평가

제1절 위탁성과 평가방법

제16조(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성과 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탁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심사, 현장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전문평가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동일시설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대행할 수 없다.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를 전문평가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전문평가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2절 위탁성과 평가절차

제18조(위탁성과서 제출) ①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가 작성하는 위탁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성과서 작성 시 위탁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탁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2. 위탁관리 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관리 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수탁자는 위탁성과 평가 시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성과서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당해 수탁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 후 위탁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위탁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위탁성과 평가결과의 조치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수탁자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수탁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해지·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관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하수도 위탁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등 운영

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절감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수탁자에게 보전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갱신 등 인센티브를 수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제23조(위탁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위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24조(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위탁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위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계약체결·해지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탁관리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평가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조치결과를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성과평가자료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영 제42조 제1항제1호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에 평가업무 담당공무원을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 제안서	사업수행능력	Ⅰ. 참여기술자	30	60	▪ 발주부서가 평가
		- 기술등급	10		
		- 경력 및 실적	20		
		Ⅱ. 참여업체	30		
		- 수행실적	15		
		- 신용도	10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Ⅲ. 가·감점	±2		
		- 전차용역관련	+1		
		- 교육훈련	+1		
		- 부실벌점	-2		
	사업수행계획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40	▪ 평가위원이 평가
		- 사업수행 목표	3		
		- 사업수행 준비계획	4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 시설의 운영계획	7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 환경 정비 계획	2		
		- 운영비 절감 방안	3		
		-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위탁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1. 기본방향

가. 위탁계약의 계약조건 및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수탁사업자의 노력과 무관한 평가지표는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평가지표별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경우(예: 슬러지 재활용지표에서 재활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지표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위탁관리 성과평가 기준은 단순관리 위탁과 복합관리 위탁으로 구분하고, 각 위탁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라. 평가지표(2. 위탁관리성과 평가지표)는 위탁형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탁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8조제1항의 위탁성과서 제출 30일전에 성과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명기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점수 산정은 선정된 평가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100점이 되도록 산정한다.

바. 평가지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탁자간 협의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최종점수 산정 시 해당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며, 이를 고려한 최종점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최종평가 점수 = ∑(평가획득점수) / 지표수

2. 위탁관리성과 평가지표

구분	평 가 지 표	책임범위		위탁시설범위		
		단순관리 수탁기관	복합관리 수탁기관	수처리 시설	관거	슬러지 처리
위탁업체 (3)	1.1 운영요원 자격 취득율	●	●	●	●	●
	1.2 운영요원 근무년수	●	●	●	●	●
	1.3 교육 및 연수시간	●	●	●	●	●
하수관거 (5)	2.1 노후관거 개선율	●	●		●	
	2.2 하수관거 진단 및 조사	●	●		●	
	2.3 하수도대장 전산화율	●	●		●	
	2.4 관거길이당 유입 및 침입수 비율	●	●		●	
	2.5 관거 유입 및 침입수 개선율	●	●		●	
하수처리장 (16)	3.1 우기시 하수 일차처리율	●	●	●		
	3.2 하수처리효율	●	●	●		
	3.3 강우시 하수관리	●	●	●		
	3.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율	●	●	●		
	3.5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	●	●		
	3.6 노후화된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선율	●	●	●		
	3.7 유량계 보정율	●	●	●		
	3.8 수질모니터링 장비 보정율	●	●	●		
	3.9 기술진단 개선완료율	●	●	●		
	3.10 하수처리 사용약품 원단위	●	●	●		
	3.1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개선율	●	●	●		
	3.12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 에너지비용	●	●	●		
	3.1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	●	●		
	3.14 수질 테스트	●	●	●		
	3.15 시설 유효 연계 이용율	●	●	●		
	3.16 통합운영관리 정도	●	●	●		

구분	지 표	책임범위		위탁시설범위		
		단순관리 수탁기관	복합관리 수탁기관	수처리 시설	관거	슬러지 처리
하수슬러지 및 재이용 (9)	4.1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율	●	●	●		
	4.2 하수슬러지 재활용율	●	●			●
	4.3 소화조 운영 효율	●	●	●		
	4.4 재생에너지 이용율	●	●	●		
	4.5 소화조 발생가스 이용율	●	●	●		
	4.6 하수처리량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		
	4.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	●	●		
	4.8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	●	●		
	4.9 유해화학물질 관리	●	●	●		●
서비스질 (11)	5.1 재해발생 빈도	●	●	●	●	●
	5.2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	●	●	●	●
	5.3 하수도 준설	●	●		●	
	5.4 민원발생 감소율	●	●	●	●	●
	5.5 하수도서비스 민원 처리율	●	●	●	●	●
	5.6 민원처리 소요시간	●	●	●	●	●
	5.7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	●	●		
	5.8 연구개발 및 지원	●	●	●		
	5.9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	●	●	●	●
	5.10 모니터 시행횟수	●	●	●	●	●
	5.1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노력	●	●	●	●	●

※ 평가지표의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체결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신고서

□ 해지

위탁기관	기 관 명		담 당 부 서 명	
	성 명(대 표 자)			
	주 소	(전화 :)		
수탁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주 소	(전화 :)		
위탁내용	위 탁 구 분	□단순위탁 □복합위탁	계 약(해 지)일	
	위 탁 기 간	년(년 월 일 ~ 년 월 일)		
	위 탁 범 위			
	위 탁(해 지)사 유			

「하수도법」 제7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 체결 □ 해지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작성방법: 위탁구분은「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공공하수도 위탁성과 평가표(제19조 관련)

수탁자 명칭 :	
주 소 :	(Tel :)
담당자 :	
공공하수도 관리 현황 :	개 □ 수처리시설 : 개 /(㎥/일) □ 관거시설 : 개 / ㎞ □ 슬러지처리시설 : 개 (㎥/일) □ 기타시설 : (통합관리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재이용 시설 등을 용량과 함께 기재)
총 인구 :	명
하수처리인구 :	명
위탁형태 :	□ 복합관리 위탁 : 개 □ 단순관리 위탁 : 개
회계운영 :	□ 공기업특별회계 : 개 □ 비공기업회계 : 개

□ 합계 점수 : 점

1. 위탁업체(3)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평가결과					
		100	80	60	40	0	점수
계							
1.1 운영요원 자격 취득율							
1.2 운영요원 근무년수							
1.3 교육 및 연수시간							

2. 하수관거(5)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평가결과					
		100	80	60	40	0	점수
계							
2.1 노후관거 개선율							
2.2 하수관거 진단 및 조사							
2.3 하수도대장 전산화율							
2.4 관거길이당 유입 및 침입수 비율							
2.5 관거 유입 및 침입수 개선율							

3. 하수처리장(16)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평가결과					
		100	80	60	40	0	점수
계							
3.1 우기시 하수 일차처리율							
3.2 하수처리 효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평가결과					
		100	80	60	40	0	점수
3.3 강우시 하수관리							
3.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율							
3.5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3.6 노후화된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선율							
3.7 유량계 보정율							
3.8 수질모니터링 장비 보정율							
3.9 기술진단 개선완료율							
3.10 하수처리 사용약품 원단위							
3.1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개선율							
3.12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에너지비용							
3.1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3.14 수질 테스트							
3.15 시설 유효 연계 이용율							
3.16 통합운영관리 정도							

4. 하수슬러지 및 재이용(9)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평가결과					
		100	80	60	40	0	점수
계							
4.1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율							
4.2 하수슬러지 재활용율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평가결과					
		100	80	60	40	0	점수
4.3 소화조 운영 효율							
4.4 재생에너지 이용율							
4.5 소화조 발생가스 이용율							
4.6 하수처리량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4.8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4.9 유해화학물질 관리							

5. 서비스질(11)

평가내용	현황 및 문제점	평가결과					
		100	80	60	40	0	점수
계							
5.1 재해발생 빈도							
5.2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5.3 하수도 준설							
5.4 민원발생 감소율							
5.5 하수도서비스 민원 처리율							
5.6 민원처리 소요시간							
5.7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5.8 연구개발 및 지원							
5.9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5.10 모니터 시행횟수							
5.1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노력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성과 최종평가결과(수탁자명), 제20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평가점수/배점

분야별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평가내용
최종점수		/100	
1. 위탁업체 (3)	분야별 점수	/100	
	1.1 운영요원 자격 취득율		
	1.2 운영요원 근무년수		
	1.3 교육 및 연수시간		
2. 하수관거 (5)	분야별 점수	/100	
	2.1 노후관거 개선율		
	2.2 하수관거 진단 및 조사		
	2.3 하수도대장 전산화율		
	2.4 관거길이당 유입 및 침입수 비율		
	2.5 관거 유입 및 침입수 개선율		
3. 하수처리장 (16)	분야별 점수	/100	
	3.1 우기시 하수 일차처리율		
	3.2 하수처리효율		
	3.3 강우시 하수관리		
	3.4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율		
	3.5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3.6 노후화된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선율		
	3.7 유량계 보정율		
	3.8 수질모니터링 장비 보정율		
	3.9 기술진단 개선완료율		
	3.10 하수처리 사용약품 원단위		
	3.1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개선율		
	3.12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요 에너지비용		
	3.1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3.14 수질 테스트		
	3.15 시설 유효 연계 이용율		
	3.16 통합운영관리 정도		
4. 하수슬러지 및 재이용 (9)	분야별 점수	/100	
	4.1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율		
	4.2 하수슬러지 재활용율		

	4.3 소화조 운영 효율		
	4.4 재생에너지 이용율		
	4.5 소화조 발생가스 이용율		
	4.6 하수처리량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7 악취 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4.8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4.9 유해화학물질 관리		
5. 서비스질 (11)	분야별 점수	/100	
	5.1 재해발생 빈도		
	5.2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지침서 및 훈련		
	5.3 하수도 준설		
	5.4 민원발생 감소율		
	5.5 하수도서비스 민원 처리율		
	5.6 민원처리 소요시간		
	5.7 주민친화적 시설 이용		
	5.8 연구개발 및 지원		
	5.9 환경서비스 질 제고 노력		
	5.10 모니터 시행횟수		
	5.1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노력		